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1가단2455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5.

주 문

1.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2018. 10.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 172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사이에 2019. 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30. 접수 제18198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신세아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5.36㎡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 대지권 비율 : 320분의 39.074

별 지 목 록 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서구 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8.967㎡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 대지권 비율 : 1360.7분의 3.509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B에 대한 부과처분 경위

- 1) 소외 B (이하 'B'이라고만 합니다)은 2013. 7. 1부터 2020. 1. 28.까지 상호 C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합니다)라는 개인사업자를 미등록을 하고 운영한 자입니다.
- 2) B은 이 사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미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에서는 2020. 1. 7.과 2021. 4. 26.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76,470,710원, 종합소득세 102,424,490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 3) 소 제기일 현재 B의 구체적인 국세 채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표).

<표1> B의 소 제기일 현재 채납액

번호	세종	귀속	납세유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단위:원)	채납액 (단위:원)
1	부가가치세	2013.07	2013.12.31	2020.01.31	8,769,680	10,282,400
2	부가가치세	2014.01	2014.06.30	2020.01.31	14,249,530	16,707,540
3	부가가치세	2014.07	2014.12.31	2020.01.31	15,021,120	17,612,100
4	부가가치세	2015.01	2015.06.30	2020.01.31	10,416,920	12,213,700
5	부가가치세	2015.07	2015.12.31	2020.01.31	8,316,800	9,751,330
6	부가가치세	2016.01	2016.06.30	2020.01.31	10,747,780	12,601,610
7	부가가치세	2016.07	2016.12.31	2020.01.31	7,521,450	8,818,880
8	부가가치세	2017.01	2017.06.30	2020.01.31	1,427,430	1,673,550
9	종합소득세	2013.12	2013.12.31	2021.06.10	3,001,810	3,136,880
10	종합소득세	2014.12	2014.12.31	2021.07.27	38,750,180	41,240,800
11	종합소득세	2015.12	2015.12.31	2021.07.27	29,553,140	30,765,120
12	종합소득세	2016.12	2016.12.31	2021.07.27	29,129,740	30,222,100
13	종합소득세	2017.12	2017.12.31	2021.07.27	889,620	916,300
합계					176,865,200	196,942,310

나. 망 D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상속인 망 D 은 2018. 8. 8. 사망하였는데, 망 D 의 상속인들은 피고 A , B 소외 E , 총 3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합니다)입니다(갑 제2호 증 망 D 의 가족관계증명서).
- 2) 망 D 이 남긴 상속재산 중 별지목록 1, 2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은 2018. 10. 25.과 별지목록 2기재의 부동산은 2019. 1. 3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3)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 의 단독소유로 하고 B , 소외 E 은 상속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 4) 이후 피고 A 는 2018. 10. 25.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 2019. 1. 30. 별지 목록 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B 과 함께 망 D 의 공동상속인이며 B 과 부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전대, 위 <표1> 기재의 부가가치세 등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한 2018. 10. 25.과 2019. 1. 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례행위 및 채무초과

사례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례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매매 등 문제권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

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은 보유중인 적극재산은 없고 195,942,31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0. 25.과 2019. 1. 30.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목록 1, 2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법정상속지분, 7분의 3) 곧 '유일한 적극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제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6호증 상속재산 포기 여부 조희에 대한 회신).

<표2> 사해행위 당시 B의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금액(원)	임증방법	해당서증
적극재산		-		
	소계(①)	-		
소극재산	국 세	195,942,310		
	소계(②)	195,942,310		
채무초과 (①-②)		△195,942,310		

4. 사해 의사 및 피고의 악의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행위이며, 피고는 B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를 물렸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B에 대한 채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 11. 30.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2018. 10. 25.과 2019. 1. 30. 피고의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사해행위 결과의 원상회복으로 별지목록 1, 2기재의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결처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